2023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(시설보급, 컨설팅)

I 사업 개요

□ 목 적

- O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·원격제어를 통한 온·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
- O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 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
- O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자재 지원

□ 사업내용

- O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
- O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, 관수관비, 환경관리, 기타(무인 방제기, 전동운반기, 레일카, 파쇄기) 자재·설비 등 지원
- O 에너지절감시설(다겹보온커튼, 자동보온덮개 등) 설치 지원

□ 지원 자격 및 요건

- O 채소·화훼·특용작물*(육묘장 포함) 자동화,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
 - * 특용작물 : 버섯, 인삼, 약용채소

□ 지원내용 및 예산

O 지원 내용·품목

-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,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재·설비, 에너지 절감시설 ○ 지원 기준 : 국비 25%, 지방비 30%, 융자(이차보전) 25%, 자부담 20% (컨설팅 : 국비 100)

O '23년 예산 : 67,476백만원(국비 16,869, 지방비 20,243, 융자(이차보전) 16,869, 자부담 13,495)

□ 사업 신청

O 장소 : 사업예정지 관할 시·군·구에 신청

O 신청기간 : 사업 시행 전년도 8월까지

□ 대상자 선정

O 시·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

□ 담당 기관 및 연락처

담당기관	담당과 담당자 연락		
농림축산식품부	원예경영과	서기관 김승동 주무관 최영준	044-201-2256 044-201-2259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	스마트팜확산실	실 장 김상호 대 리 유지원	044-861-8761 044-861-8874

Ⅱ /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(스마트팜 시설보급·컨설팅) 채소·화훼·특용작물*(육묘장 포함)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
 - * 특용작물 : 버섯, 인삼, 약용채소
- (시설원예현대화)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·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·농업법인· 생산자단체
- (에너지절감시설) 채소·화훼·버섯류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

< 관련 내용>

- 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 - 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 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 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- 생산자단체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 - 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(스마트팜 시설보급·컨설팅) 채소·화훼·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·농업 법인·생산자단체
 -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·화훼·특용작물을 재배하며,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
 - *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. 설치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
- (시설원예현대화) 원예시설(채소류·화훼류)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
 -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지원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(농협·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, 유사도매시장 등)에 출하 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

○ (에너지절감시설) 채소·화훼·버섯류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·화훼·버섯류를 재배하고,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

< 지원제외 대상자 > -----

- •「보조금법」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
-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
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,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,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,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
-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 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·품목조합연합회 등
-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
 - * 파프리카, 참외, 백합, 절화, 친환경
-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·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-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"라 함)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·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

	○노후화된 온실 개보수(시설원예현대화사업)와 동시에 추진
	하는 경우
 스마트팜 시설보급·	○ 태풍·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·농업법인(시장·군수 종합검토 필요)
건설팅 - 컨설팅	○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*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(화훼류 재배
12 2 0	농가에 한함)
	* 수국, 프리지아, 알스트로메리아, 칼라, 심비디움, 춘란, 호접란, 선인장
	(다육식물 포함), 스타티스, 리시안서스, 거베라 등 11개 품목
	ㅇ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
	ㅇ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	○ 태풍·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·농업법인(시장·군수 종합검토 필요)
시설원예 현대화	○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*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(화훼류 재배
	농가에 한함)
	* 수국, 프리지아, 알스트로메리아, 칼라, 심비디움, 춘란, 호접란, 선인장
	(다육식물 포함), 스타티스, 리시안서스, 거베라 등 11개 품목
	○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에너지절감시설	○ 태풍·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·농업법인(시장·군수 종합검토 필요)

* (공통사항) 정부지원대상 '생산·유통조직"에 참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

○ 시장·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(중복적용 가능)

스마트팜 시설보급· 컨설팅	○ 농작물재해보험(원예시설) 가입 ○ 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규격 시설 ○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,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○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○ 지역 푸드플랜 참여(또는 참여 약정)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 조성사업 참여 ○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○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
시설원예 현대화	○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○농작물재해보험(원예시설) 가입 ○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규격 시설 ○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,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○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○지역 푸드플랜 참여(또는 참여 약정)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 조성사업 참여 * 다만, 시장군수는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·군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30% 이하로 지원
에너지절감시설	○농작물재해보험(원예시설) 가입 ○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규격 시설 ○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,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○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*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% 이상 수출 시에 한함 ○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○지역 푸드플랜 참여(또는 참여 약정)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 조성사업 참여 ○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·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

3.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

- (스마트팜 시설보급·컨설팅)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
 - 센서장비 : 외부 온도·풍속·감우·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, CO₂, 토양수분, 배지수분, 양액 EC/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
 - 영상장비 :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
 - 제어장비 : 환풍기, 천창, 측창, 차광커튼, 보온커튼, 광량, CO₂,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
 - * ICT 기반구축 시설·장비(시설원예현대화 장비, 에너지절감 자재 지원 대상)와 제어장 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(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)

- 정보시스템 : 온실 내 센싱, 제어정보의 모니터링, 제어 및 분석 시스템, 화재경보기(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)
 - *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·경영관리는 필수
 - *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(KS X 3266, 2022)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(KS X 3265, 2022)을 따라야 함
- 통신주(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)
-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
- *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,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(전담기관)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- (시설원예현대화) 채소·화훼류 온실·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, 지자체 공동구매,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·설비

	○측고인상 :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·설비
	* 측고인상 후 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(적설심·풍속)에 부합
	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
	○ 관수관비 : 양액재배시설, 농업용 정수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점적
채소류·화훼류	관수, 자동관수, 탄산가스발생기
온실·공정육묘장	○ 환경관리 : 자동개폐기, 환풍기, 순환팬, 제습기, 차광·차열시설,
시설현대화	보광시설, 온습도조절기
	ㅇ기 타 : 무인방제기, 전동운반기, 레일카, 파쇄기, 빗물저장
	시설, 방충망*
	* 수출 농산물 재배용 온실에 한해 지원(단,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
	시에만 가능)
	○ 골조(KS 규격제품), 장기성 필름
	* (골조)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
	(장기성필름)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또는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
지자체 공동구매	시설에 한해 지원
품목	*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,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
	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(자재구입
	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따른 공동구매절차 준수)
	* 단, 시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,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
	제출해야하며, 장기성 필름 지원 농가는 폐비닐처리 증빙자료도 제출
	○개화조절시설(저온설비 등), 하절기온도하강설비, 온도하강
	차광시스템,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, 휴작기 종구저장시설,
화훼류 신수출전략 품목 육성	근권냉난방기, 습식유통설비 등
	○ 난류(호접란·심비디움)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
	시설·설비 : 이중출입문(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
	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), 재배벤치(바닥으로부터 46cm
	이상 높이,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)

- <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제외 대상시설 > ----
-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, 시설·장비 임차료, 전기인입시 기본거리(200m) 초과분
- 단동형·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, 단동형·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
- 전기·유류·가스 냉난방기, 농기계(트랙터, SS분무기, 예취기 등), 저온유통 차량, 소모성 자재(배지, 상토)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
- 배지,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
- 예냉·저장·선별시설 등(융자지원 전환)
- (에너지절감시설) 다겹보온커튼*, 자동보온덮개*, 순환식수막재배시설, 열회수형 환기장치, 배기열 회수장치
 - *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중요재산에 서는 제외되나, 시·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(철거·보관·재설치 계획 등)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

4. 지원형태 및 방법

- 국고재원
 - 보조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 - 융자(이차보전) :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
- 지원형태: 국비(자치단체자본보조) 25%, 지방비 30, 융자(이차보전) 25, 자부담 20
 -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·도가 30%, 시·군이 70%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,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
 - * 융자(이차보전)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.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
 - 융자(이차보전) 금리 : 고정(2.0%), 변동(시중금리*-2.0%)** /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 - * 시중금리 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 - **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
 - * 컨설팅 : 국비(민간경상보조) 100%
- 사업시행기관: 시장·군수·자치구
-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·군·자치구를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·군·자치구에 신청하고, 시장·군수·자치 구청장은 타 시·군·자치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
- 컨설팅 비용(2시간 1회, 50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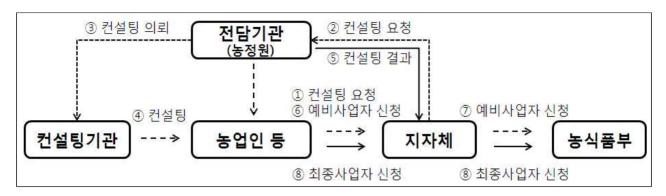
5. 지원한도액 기준(범위) 및 기준단가

- (스마트팜 시설보급·컨설팅) 200백만원 한도(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)
 - *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·장비(시설원예현대화 지원대상, 에너지절감자재 지원대상)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
 - * 표준사업비(0.33ha 기준):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,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
 - *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,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·확인(사업비산출근거, 견적서, 타 지자체 사례 등)을 거쳐 집행하되,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활용
- (시설원예현대화) 사업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, 사업시행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·확인(사업비 산출근거, 견적서, 타 지자체 사례 등)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
- (에너지절감시설) 본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,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·확인(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)을 거쳐 집행하고,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

설비형식	기준단가	지원내용
	수평권취식 13천원/m²	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 (항온법 기준 보온율 70% 이상) * 단,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·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
다겹보온커튼	예인식·외부권취식 11천원/m²	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
	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/m²	○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% 이상 제품
순환식 수막재배시설	□ =1 o1 /²	○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
열회수형 환기장치	5천원/m²	○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
자동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	2.5천원/m²	○ 작물별·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

- * 다겹보온커튼과 자동보온덮개의 기준단가 단위(m²)는 설치되는 커튼 또는 보온덮개의 면적을 의미, 나머지 시설의 기준단가 단위(m²)는 설치되는 온실의 면적을 의미
- *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

Ⅲ / 사업추진체계



- ※ 사업신청, 대상자선정, 자금신청·배정,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,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운용 병행
- ※ 스마트팜 장비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이고, 시설원예현대화 장비 및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에서 제외(필요시 진행 가능)

1.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- 시·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(전년도 7월)
- 시·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·도별 (가)내시 통보(전년도 9월)

시·도

- 시·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(전년도 7월)
- 시·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(전년도 8월)
- 시·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(전년도 9월)
-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(전년도 9월)

시·군·자치구

- 사업대상 농업인·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, 신청방법,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
-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 등을 검토 후 시·도에 제출(전년도 8월)

- 검토시 사업 신청자의 사업요건 충족 여부,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,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, 중복·편중지원 여부,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(「기본규정」제35조)
-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해 산출근거(계약서, 견적서 등), 이전 지원 실적 등을 통해 적정여부를 확인 하고. 원가계산서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
- *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, 지자체 공동구매,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원가계산서를 통한 사업비 적정여부 확인 절차 생략 가능
- * 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(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)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고, 원가계산서 발급비용(부가세 포함)은 총사업비에 반영이 가능하며, 단품 30만원,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*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
- 스마트팜 시설보급은 컨설팅 전담기관(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)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, 컨설팅기관에서 컨설팅 후 제출한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(사전점검)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
-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(전년도 9월)
-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(전년도 10~12월) * 사업자 선정기준표(별첨 1)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

사업대상자

-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의견수렴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및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 시 ·군에 제출(전년도 3~8월)
-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 (계약서, 견적서 등) 첨부
 - *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
- 융자(이차보전) 희망농가는 농협은행(농·축협 포함)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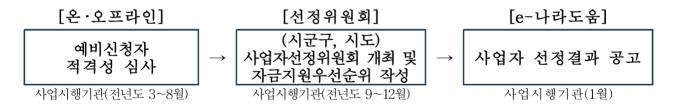
[스마트팜 시설보급]

-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시·군·자치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,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및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 시·군에 제출(전년도 3~8월)
 -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 (계약서, 견적서 등)를 첨부
- 컨설팅 전담기관(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)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 하고, 컨설팅기관 선정(전년도 상반기)
 - ICT 융복합 시설의 규격·서비스 기준,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안내
 -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농가,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(연중)
- 컨설팅기관은 농업인 등 대상으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시·군 및 전담기관에 제출(전년도 8월)
 - 컨설팅 시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

[시설원예현대화]

○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사업 신청시 출하약정서를 시·군에 제출

2. 최종사업자 선정단계



농림축산식품부

- 시·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(전년도 12월)
- 시·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, 시·군·구 평가 결과*(매년 1월 평가계획 별도 통지, 농식품부 → 시·도) 등을 고려하여 시·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(전년도 12월 또는 1월)
 - * 평가결과는 2024년 예산부터 반영

시·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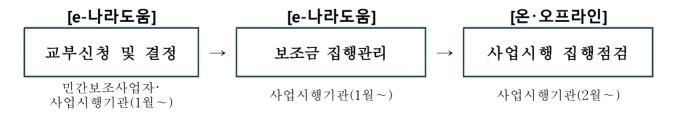
-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·요건,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,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경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(전년도 12월)
- 시·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·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(전년도 12월 또는 1월)

시·군

-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·요건,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,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·도에 보고(전년도 12월)
 -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·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(전년도 9월~12월)
 - * 시·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(Agrix)에 등록·관리(시·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)
- 시·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(전년도 12월 또는 1월)
 - 지원계획,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
-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점검 실시

3.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

자금배정



농림축산식품부

- 시·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·교부하고(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)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
- 시·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(재연장)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

시·도, 시·군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국고보조금 및 이차보전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농식품부 또는 시·도에서 배정·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·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·교부(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)

자금집행

시·도, 시·군

- 시장·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,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
 - 기계·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 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등 발급 여부 확인(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는 필 요시 확인)
- 시·군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(국고·지방비)에 따라 환수 조치
 - *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
- 시장·군수는 원활한 정책자금(이차보전)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 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(영수증·세금계산서 등)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 (준공) 확인서(별첨 2) 발급
 -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정책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*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·도에 제출하고 시·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
 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*하고 현지 확인·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·도에 제출하고 시·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
 - *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대출 실현 가능성(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, 신용수준, 융자담보확보여부 등) ③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(원인행위 여부 등) 등
 - **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(변경 시 사전 안내)

-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법령과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,「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」등에 따라 수행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사업대상자에게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 및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58조 제2항 "농식품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"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
 - * 자부담을 선집행(100%)해야 하며,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%를 선집행하고, 사업량의 50%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

농협은행(농·축협)

-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·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(준공)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
 -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·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
-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
 - * 시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시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기능

사업대상자

-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, 시·군에 사업비 (국비, 융자(이차보전), 지방비) 배정·교부를 요청하며, 융자(이차보전) 대출 신청
-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(이차보전)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,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·군에 연장신청
 - 융자(이차보전)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, 사업은 완료되었으나, 인·허가 등 행정절차, 담보물권 확보,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(8월말까지)이 필요한 경우, 6월 15일까지 시·군에 재연장 신청
 - *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(변경 시 사전 안내)
 - 다만,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

4. 사업 시행 단계

공통사항

- 지원대상 기계·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,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
 - 사업수행자(시공업체 등)는 납품하는 기계·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
 -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·군에 제출
 - *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,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, 문구 등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(예시 : 특허증,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),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
 -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(원본)와 시·군(사본)에 제출
 - ③ 필요시 원가계산전문기관(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)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·군에 제출(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, 지자체 공동구매,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)
 - * 원가계산서 발급비용(부가세 포함)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,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 - *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

설계·시공·갂리

- 시장·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·시공·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
 - 관정은「지하수법」, 전기시설은「전기공사업법」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·시공, 기타 시설·장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
 - 시공은「건설산업기본법」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
 - * 금속구조물·창호·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
 - *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'19년 이후 금속 구조물·창호·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
- 시장·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

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

시·군

[공통사항]

- 시장·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,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확인
- 시장·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·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·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(시공업체 등)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 보증서를 확인
- 시장·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,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(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)
- 시장·군수(또는 사업대상자)는 주요 기계·장비의 공동구매(단가계약) 장려
 -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,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·군수가 공동 입찰·계약 등을 통해 수행
 - 시공업체 선정·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.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
 - *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,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 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
 -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(별지 제5-1, 2호 서식)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

[시설원예현대화]

-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(적설심· 풍속)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
 - * 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
 -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(별지 제5-1, 2호 서식)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
-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하는 경우 다음 절차 준수
 - * 수요조사 → 모집공고(농협) → 견적서 제출 → 공급가격 결정 협의회(지자체, 농협, 농민단체, 농업인, 업체) → 단가계약 체결(농협-업체) → 공급(농협)

사업계획 변경

농림축산식품부

○ 농식품부는 시·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·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

시·도

- 시·도지사는 시·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하고,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
- 시·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, 예산 범위를 초과 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·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

시·군

[공통사항]

-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·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·도에 보고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·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·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·도에 보고
- 시장·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·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·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
 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, 시·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

[스마트팜 시설보급]

○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를 교체·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컨설팅 전담기관에 통보

사업대상자

-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·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 제출
-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

사업 포기

-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·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
- (포기)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
- (이월)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
 - *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
 - * 단,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,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

5.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- 점검시기 : 분기별 1회 이상.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
- 점검내용 및 방법 : 사업계획 이행,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
 - 일정규모(10억원)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(추진상황, 애로사항 수렴 등)
- 점검결과 조치 :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

시·도, 시·군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,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
 - 점검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본 사업으로 설치·공급된 시설물,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
- 시장·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·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·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
 -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
-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

<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>

중요재산	사후관리기준·기간		처 분제 한기 준
■ 온실	준공일	10년	
■ 설비시설	준공일	7년	매각,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금지
■ 주요기계·장비	납품일	5년	

- *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·도지사 승인 후 처리
- 시장·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·결산하여 결과를 시·도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정산결과를 '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'에 따라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
-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법령과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」등 준용

[스마트팜 시설보급]

○ 시장·군수는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대해 컨설팅 전담기관 (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)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

사업대상자

-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
-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
-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(별첨 3)
- 시·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·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·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

[스마트팜 시설보급]

- 농식품부(농정원)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·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, 제어 정보, 생육정보, 수확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
- 사업대상자는 시설·장비 설치 완료 후 시·군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

스마트팜 컨설팅 전담기관

- 사전 컨설팅, 시설설치 컨설팅,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
-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·점검

스마트팜 컨설팅기관

○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,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·군에 제출

제재 및 처벌내용

시·도, 시·군

- 시장·군수는 사업자 선정*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
 - *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(공문 시행일) 기준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, 무단 용도 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(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), 사업 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,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
 - 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79조의 해당기간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-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,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요청
-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
- * 사업수행자(업체)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
- 부정수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 배제

[시설워예현대화]

○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후 출하약정(출하권 위임계약) 미이행 등 위반 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 상에서 제외 조치

농협은행(농·축협)

- 대출취급기관이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 급·중도회수 개시일을 시·군 등에 통지
- 대출취급기관은 시·군의 요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·도(시·군)에 통보

6.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

- 농식품부(지자체)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
 - 공통사항: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
 -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
-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,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
-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·도(시·군)별 예산 배정 시 반영

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

1. 2024년도 사업수요 조사

- 시·도지사는 2024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('23.3월)
 - * '24년 예산 수요 파악시 시설원예현대화, 에너지절감시설, 스마트팜 시설보급 구분 없이 '스마트팜 시설보급'으로 일괄 수요조사 실시 및 일괄 예산 편성
- 농식품부는 시·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
 - * 사업추진절차 : 수요조사(~'23.3월) → 사전컨설팅(~'23.8월) →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(~'23.9월) →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('23.12월) → 사업추진('24.1월~)

2. 202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

- 신청서 제출기관 : 시장·군수
- 제출기한 : '23, 8월
- 신청자격: '23년도 신청자격 확인(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)
 - * '24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'23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,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(변경 시 추후 통보)

3. 농어업재해대책 지원

-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(시설보급)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% 이상인 경우에는 1년(30%이상~50%미만) 또는 2년(50%이상)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(2022.12.11.부터 시행)
 - *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·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「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」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
 -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·이자감면 방식을 준용

V 주요변경사항

현 행 (2022)	변경(2023)	변경사유
II. 사업시행 주요내용 2. 지원자격 및 요건 <신 설> ○ 시장·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가점 부여(중복적용 가능) - APC·농협·농업법인·조공법인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·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	II. 사업시행 주요내용 2. 지원자격 및 요건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라 함)은 다음의 경우지원 자격·요건을 충족하고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우선 지원 * (공통사항) 정부지원 대상 '생산·유통조직"에 참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○ 시장·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가점 부여(중복적용 가능) <삭 제>	○ 생산·유통 통합성 강화를 통한 시장관리 주체 육성을 위해 개선 ○ 생산·유통조직이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
3.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○ (스마트팜 시설보급·컨설팅)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- 센서장비~제어장비: "생략" *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·경영관리는 필수 *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 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(KS X 3266, 2018)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(KS X 3265, 2018)을 따라야 함 4. 지원형태 및 방법	3.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○ (스마트팜 시설보급·컨설팅)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- 센서장비~제어장비 : 현행과 같음 - 정보시스템 : "생략" *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·경영관리는 필수 *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 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(KS X 3266, 2022)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(KS X 3265, 2022)을 따라야 함 4. 지원형태 및 방법	○ 인터페이스 표준 현 행화

현행(2022)	변경(2023)	변경사유
○ 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	○ 국고재원	○재원별 자금 출처 명확화
행지원기금(FTA기금) ○ 지원형태: - 스마트팜 시설보급: 국비 30%, 지방비 30, 자부담 40 * 컨설팅: 국고보조 70%, 자부담 30% - 시설원예 현대화: 국비 20%, 지방비 30, 융자 30,	- 보조 :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(FTA기금) - 융자(이차보전) :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○ 지원형태: 국비(자치단체자 본보조) 25%, 지방비 30, 이차보전 25, 자부담 20 * 컨설팅 : 국비(민간경상보 조) 100%	○ 시설원예 지원사업 개편 ('22.5.)에 따라 보조율 을 일원화하고, 컨설팅 비용은 국비 100% 지원
자부담 20 - 에너지절감시설: 국비 20%, 지방비 30, 융자 30, 자부담 20 ○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 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·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·군에 신청 * 해당 시·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확인	○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·군·자치구를 달리할 경 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 업예정지 관할 시·군·자치 구에 신청하고, 시장·군수· 자치구청장은 타 시·군·자 치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 별 받지 않도록 주의	○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
5. 지원한도액 기준(범위) 및 기준단가 사업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, 사업시행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·확인(사업비 산출근거, 견적서, 원가계산서, 타 지자체 사례 등)을 거쳐 집행	5. 지원한도액 기준(범위) 및 기준단가 ○ <mark>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활용</mark>	○민원·행정제도 개선 계획 (행정안전부)에 따라 보완
Ⅲ. 사업추진체계 <신 설>	III. 사업추진체계 ※ 스마트팜 장비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이고, 시설 원예현대화 장비 및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 대상자는 컨 설팅 의무 대상에서 제외(필 요시 진행 가능)	○컨설팅 대상자 명확화
2. 최종사업자 선정단계	2. 최종사업자 선정단계	

현행(2022)	변경(2023)	변경사유		
농림축산식품부 ○ 시·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 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· 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(전년도 12월 또 는 1월)	농림축산식품부 ○ 시·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, 시·군·구 평가 결과	○시설원예 지원사업 개 편계획('22.5.)에 따라 시·군·구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배정		
시·군 ○ <신 설>	지·군			
3.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	3.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			
자금집행	자금집행			
지·도, 시·군 시장·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,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기계·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,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발급여부 반드시 확인	야 하며, 자금사용 및 지원 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- 기계·장비에 대한 공인인	○민원·행정제도 개선 계획 (행정안전부)에 따라 보완		
사업대상자 ○ <신 설>	사업대상자 ○ 다만,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 연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	○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 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개정사항 반영		
4. 사업 시행 단계	4. 사업 시행 단계			

현행(2022)	변경(2023)	변경사유
공통사항 ○ 지원대상 기계·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,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,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-사업수행자(시공업체 등)는납품하는 기계·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~ ② 생략 ③ 원가계산전문기관(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)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·군에 제출(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사업,지자체공동구매,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검토완료시 제외) * 원가계산서 발급비용(부가세포함)은 사업비에 포함하되단품 30만원,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	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 성적서, 한국농기계공업협동 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- 사업수행자(시공업체 등)는 납품하는 기계·장비에 대 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~ ② 현행과 같음 ③ 필요시 원가계산전문기관 (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)에서 발급 받은 원가계산서를 시· 군에 제출(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, 지자체 공동 구매,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) * 원가계산서 발급비용(부가세 포함)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, 시설공사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	○민원·행정제도 개선 계획 (행정안전부)에 따라 보완
지·도, 시·군 [스마트팜 시설보급] 시장·군수 는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컨설팅 자부담분 납부 안내 및 확인 후 컨설팅 전담기관(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)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	5.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지·도, 시·군 [스마트팜 시설보급] 시장·군수 는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대해 컨설팅 전담 기관(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 원)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	○컨설팅 보조율 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
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시설·장비 설치 완료 후 컨설팅기관에 설치점검 컨설팅 자부담금을 납부하고, 시·군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	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시설·장비 설 치 완료 후 시·군에 설치점 검 컨설팅 요청	○컨설팅 보조율 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

현행(2022)	변경(2023)	변경사유
제재 및 처벌내용	제재 및 처벌내용	
시·도, 시·군 - <신 설>	시·도, 시·군 - 부정수급에 관하여 유죄판 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수 행업체도 수행 배제	○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 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개정사항 반영
Ⅳ.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	IV.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	
1.~2. 생 략 <신 설>	1.~2. 생 략 3.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○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사업(시설보급)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% 이상인 경우에는 1년(30%이상~50% 미만) 또는 2년(50%이상)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 (2022.12.11.부터 시행)	○「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 책자금」고시 제정안 반영(지원대상 확대)
	*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· 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「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」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-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 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· 이자감면 방식을 준용	

[통합]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

	유 (해당유형	형 ☑ <u>표</u> 시)	□ 개인	단체(□ 영청	5조합, 🗌 농업회	사, □ 생산자단	톄, □ 기타)
	사업신 (개인·법	청 자명 인·단지)	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	
일반 현황	대표자명				생년월일		
	재배 (사육	작물 축종)			재배규모 (사육두수)	(m², 마리)	
20	소속 농가 수		호		사업 참여 농가 수	<u> </u>	
	주소						
	일반전	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	전자우편 (e-mail)	
		원예	유리온실	경질판온실	자동화비닐온실	일반온실	버섯재배사
	생산	II	m²	m²	m²	m²	m²
	시설	축산	무창돈사	무창계사	무창오리사	무창분만돈사	무창임돈사
			마리	마리	마리	마리	마리
시설 현황	부대	시설	양액재배	예냉·저장·선별	관수시설 식	환경제어 식	기타
25		ı LHL	m² 온풍난방	m² 온수난방	수 본일러 온수보일러	 태양열병합	기타
	난방	난방 유형					∕ I ∟Γ m²
	년명 시설	 가온	m² 고체연료	m² 유류·가스	m² 전기	m² 지열·지중열	기타
	16	가는 방식	m²	m²	m²	Ma Moa m²	m²
		<u> </u>	사업명	세부사업	 신청		신청면적
	사업종류 (해당사업 ☑ 표시)	ICT 으보하 하사 □ 시서법그	□ 시설보급	□ 시설원예현대화장비 □ 화훼류신수출장비 □ 스마트팜장비		m²	
신청				□ 다겹보온커튼 □ 순환식수막시	- 설 □ 기타()	m²	
내용			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	□ 신재생에너지	□ 지열, □ 지일 □ 폐열, □ 목지 □ 공기열	별(성능개선) 대펠릿난방기	m²
	사업예정지					(반드시	상세주소 기재)
	재원조달 (백만원)		계	국비	지방비	이차보전 (신청액)	자부담
				<u> </u>			
다음 기	위와 배인정보틝			사업을 신청하며	, 사업신청과 관련	변하여 사업대상지	· 선정기관 등이
☞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·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, 제어정보, 생육정보,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?							
☞ ICT융복합 확산사업(시설보급) 추진 시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?							
						□ 동 <u></u>	의 🗌 미동의
						20 년	월 일
			신청자		(서명 또는	- 인)	
0	이 시	장·군수	· 구청장 귀하				
구비사	구비서류: 사업계획서(사업종류별) 1부, 참여농가 현황 1부(별지 제3호 서식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						
	제 3	3자 제공	동의서(별첨) 1년	₽.			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,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.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- 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**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의 사업추진시, 적 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**
- 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대표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일반전화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
- 3. (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) **준영구(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의 사업 기간**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)
- 4.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□ 동의 □ 미동의	
	1

※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

- 1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) **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** 수행기관(농협중앙회)
- 2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)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
- 3. (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 대표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일반전화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
- 4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) **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**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(목적달성시 1년)
- 5.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	는데 동의	의하십니까	?	□ 동의 □ 미동의
	년	월 본인 성	일	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 사업계획서

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(시설보급) 사업계획서

1. 신청자 현황

가. 사업자 현황

단지(단체)명			대표자명		
주소				(반드	시 상세주소 기재)
일반전화		휴대전화		모사전송(FAX)	
회원농가 수		호	재배품목		
단지규모	m²	시설재배규모	m²	수출참여규모	m²
	지원연도	년	사업명		
기 지원액 (백만원)	계	국고	융자	지방비	자부담
(122)					

나. 생산현황

* '23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

구 분	재배면적(m²)	생산량(톤)	소득액(백만원)
2021년			
2022년			
2023년			

2. 시설 현황

시설면적		m²	사업신청 면적			m²	
시설종류	(예시) 유리, 경점	질판, 자동화비닐	온실형태	(예시) 5연동, 10동			
시설위치		마을끼	ト지 거리, 기타 단지	디 특징			
부대시설	양액시설	냉난방시설	보온시설	통합제어	기타		
형태(종류)							
제조사(모델명)							

3. 사업추진계획

가. 사업계획

시군	사업명	농가수	재배 품목	사업구분	세부사업	사업량	소요액 (백만원)	추진시기 (기간)
계						m², 식, 대		

주1) 작성요령

가. 사업명: "ICT융복합확산"

나. 사업구분 : 시설원예현대화, 화훼류신수출, 스마트팜 장비, 에너지절감장비

다. 세부사업

- 시설원예현대화 :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점적관수, 자동개폐기, 환풍기, 무인방제기 등

- 화훼류신수출 :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, 휴작기 종구 저장시설, 근권냉난방기 등

- ICT 융복합확산 : 외부센싱, 내부센싱, 통합제어, 온실관리시스템, 모니터링 등

- 에너지절감장비 : 다겹보온커튼, 자동보온덮개, 순환식수막시설 등

나. 세부계획

사업 구분	세부사업	단가(천원)	개수	합계(천원)
합 계				
0				
-				
_				
0				
_				
0				
_				
0				
-				
0				
_				
0				
_				
0				
_				

* 소요액 산출근거(계약서, 견적서, 원가계산서 등)는 상세히 첨부

다. 사업비 소요

구분 사업량		사 업 비 (백만원)								
ТС	사타의	계	국고	융자	지방비	자부담				
합계	m²									
농가명										
농가명										
농가명										
농가명										
농가명										
농가명										

(3쪽에 계속)

(3쪽)

- 라. 사업비 확보계획
- 예산(지방비)확보 실적·계획(문서, 방침,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)

_

∘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(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)

_

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(보증기관의견서, 등기부등본, 감정평가서, 토지가격확인원<담보 제공승낙서, 인감증명: 타인소유> 등 첨부)

_

- 4. 생산·수출·경영 계획
- 가. 연도별 출하·판매계획
- ∘ 연도별 출하계획(계통출하, 개별출하, 기타 등)

_

• 연도별, 판매처별 비중, 물량,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

_

- 나. 수출계획·전략
 - 연도별,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

_

∘ 수출전략

_

- 다. 경영 계획
 - ∘ 작목 재배관리, 정보화(PC, 모바일) 등의 학습계획

_

∘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(후계자 활용 등)

_

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사업신청자 (서명 또는 인)

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 (서명 또는 인)

○○도지사·광역시장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 사업 참여농가 현황

사업 참여농가 현황

□ 사업신청자(단체)명: □ 대표자명:

번호	농가명	주소지	연락처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재 배 면 적 (m²)		시설	재 배 품목	예상형	량(톤)
		<u> </u>	신국시	등록번호	(m²)	종류	면적(m²)	품목	생산	수출
계	명	_	_	_		_		_		
1										
2										
3										
4										
5										
6										
7										
8										
9										
10										
11										
12										
13										
14										
15										
16										
17										
18										
19										
20										
21										
22										
23										
24										
25										

주1) 시설종류는 유리·경질판·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,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

주2)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(엑셀 등) 활용 작성·제출

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(예시)

※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

수신: ㅇㅇㅇ(보조사업자)

1.	$\lceil \circ \circ \circ ceil$	사업	추진을	위한	보조금을	다음과	같이	교부결정	하오니	붙임
	교부조건:	을 준	수하여	보조사	·업 수행이] 만정을	- 기하	-여 주시기	바랍니	다.

□ 보조 사업	명:	
---------	----	--

□ 보조 사업자: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:

○ 사업규모:

사업명	총사업비	국비	지방비	재정융자	수익자부담
세부사업명					
(△△사업)					
(□□사업)					

*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(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)

○ 보조비율 : OO% (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)

○ 사업내용 :

※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

□ 교 부 목 적 :

□ 예 산 과 목 : 0000회계(00계정)

분야	부문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	목·세목
120	123	3000	3031	306	330-01
교통및물류	도시철도	0000	0000	00000	자치단체 경상보조

□ 교부결정내역

(단위 : 원)

세부사업명	예산액	기 교부액	교부 요청액	금회 교부액	교부잔액	비고
ㅇㅇ사업	A+B					
(△△사업)	A					
(□□사업)	В					

- *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(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)
- 2. ㅇㅇㅇ(보조사업자)는 「ㅇㅇㅇ」사업 추진 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합공사 2억원, 전문공사 1억원, 일반공사 8천 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 - 가.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. 다만,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.
 - 2.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
 - 3.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
- 3.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(「보조금법」 제30조)
 - 다.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- 라. 중앙관서(또는 시·도지사)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
 - 마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(해당 부처에 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)
 - 바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 - 사.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

붙임: 보조금 교부조건 1부.

20 년 ㅇㅇ월 ㅇㅇ일

[별지 제5-1호 서식] 물품구매 표준계약서

							3.3.3.= .3	
							계약번호 제	
		물	품구매표준계	약서			호	
							공고번호 제 호	
	비	주 처					~	
겨] =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	<u>'</u>	 상호 또는 법	이 며 치ㆍ		·법인등록변	ਮ ਨ.	
0	부 게 야		대표자:	년 ở ở·		·전화번호:	[1 오.	
ス	/11	· ' '	대표사. 주 소:			'신작인모.		
	묵	품 명	1 7.					
				의 	성(₩)		
	-				성(₩)		
격					성(₩)		
<u>o</u>		고 0 1 상 금 율			%			
냬		변동계약						
, 용	' ·	- 정 방 법						
O		동일자			~			
		장소	<u>·</u>			<u> </u>		
		나사 항						
	 자치단체의	의 장(계약담	당공무원)과 겨	계약상대자는	: 붙임의 계	계약문서에	의하여 위 물	불품에
τ	대한 구매계	세약을 체결하	하고 신의에 대	따라 성실ㅎ	1 계약상의	의무를 여	이행할 것을	확약
č	하며, 이 계	약의 증거호	로서 계약서를	작성하여	당사자가	기명날인한	한 후 각각]	통씩
j	보관한다.							
ъ.	0.07							
뭍의			찰유의서 1부	ы				
			약일반조건 1					
			약특수조건 1· 용서 또는 산		旦(司人)			
	4.	114 % 41	중시 또는 선	눌네ㅋ시 1	十(包干)			
			20					
				계약담당				
			. 1 . 1 . 11	또는 농업((인)	
				계약상			(인)	
			물	품 내 역			()	
							유지보수	.
	품 명	규 격	단 위	수 량	단 가	금 액	기간	
							1 -	
								
								
					<u> </u>	1		_

※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, 동법 시행령 제74조,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

[별지 제5-2호 서식] 공사도급 표준계약서

			·		<u>u / 11 / 11 / 11 / 11 / 11 / 11 / 11 / </u>	·		괴	약번호	제	호
		공	사도급표	준계	약서				<u> </u>	•	 호
	발	 주 처								••	
계 약		- 상 대 자	·상호 또 ·대표자 ·주 소	는 1	법인명칭			l인등록 l화번호	_		
자	연 대	보 증 인	·상호 또 ·대표자 ·주 소	는 1	법인명칭		•	d인등록]화번호			
	공	사 명									
	계 익	= 금 액	금			원정(₩	<i>‡</i>)		
	총공사	부기금액	금			원정(₩	<i>‡</i>)		
계	계 약	보 증 금	금			원정(₩	<i>‡</i>)		
약	현	l 장									
내	기 체	상 금 율					%				
영	물가 t 금 액 3	년동계약 스정방법				•	•	•			
	착 공	연 월 일				•	•				
	준 공	연 월 일									
	기티	- 사 항									
		하자	·담보책임	(복	합공종의	경우 공	종별 -	구분 기	재)		
7	공 종	공종별 계	약 금액	하	자보수보	.증금율(%) 및	금액	하자	담보책	임기간
				()%	금		원정			
				()%	금		원정			
				()%	금		원정			
의 이	서에 의 의무를 행할 것·	체의 장(계하여 위의 이행할 것 을 확약한대 통씩 보관하	공사에 을 확약 다. 이 계	대한 하며,	도급계9 연대보충	약을 체기 중인은 계	결하고 계약자의	신의에 와 연대	따라 하여 계	성실히 약상의	계약상 의무를
붙	임서류 :	 공사임 공사계 공사계 설계서 산출내 	약일반조 약특수조 1부 (필	:건] :건] 수)	l부 l부	·					
				,	지자체 계	약담당	공무원			(م)	`
					또	는 농업	(법)인			(인)
						계약	상대자			(인)
						연대.	보증인			(인)

[※]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, 동법 시행령 제74조,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

(통합)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

	선정사업	□ ICT융복합획	박산(해당유형 ☑	표시)	□ 농업여	에너지이용효율화(천	해당유형 ☑ 표시)
	선정시설		대화 □ 화훼류신 보급 □ 에너지절		□ 지일	별 🗌 폐열 🗌 공기	열 🗆 목재펠릿
	유형	□ 농	5업인, □ 농업법	인, 🗆 성	생산자단체	∥ (해당유형 ☑ 표	포시)
일반	사업대상자명 (개인·법인·단지)			농업 등록	경영체 ·번호		
현황	대표자명				월일		(남/여)
	재배작물 (사육축종)			재 배 (사육	규모 두수)		(m², 마리)
	소속 농가 수		호	사업 농기	/ 참여 ㅏ 수		호
	주소						
	일반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		팩스번호	
	사업명	사업니	내용	규모 (m² 대	·수량 , 개소)	소요액 (백만원)	추진시기 (기간)
		합.	계	(111, -11	, • 11 — /	(¬ L L)	(*112)
	당초						
사업							
계획		합;	 계				
	U4 74						
	변경						
	변경 사유 당세히 작성)						
	위와 같이 시설원	l예 분야 지원사업	변경신청을 요청	하오니 :	검토 후 중	승인하여 주시기	바랍니다.
			20 년 월	일			
					신청기	የ : ○ ○ ○	(서명 또는 인)
004	시장·군수·구청	당 귀하					
		년경 필요 시 해당 <i>/</i>	시장·군수·구청장	승인 후	추진, 시·	도지사는 시·군 승	응인사항 확인 후
지초	세 없이 변경결과	농식품부 보고					

(통합) 시설원예 분야 사업추진상황 보고

(사업명:)

(단위: 천원)

			재	사	세		사업	진도			()분기	까지	사업비	집호	생내역		
시군	사업자명	농 가		업 구	부 사	사 업 량	주요	고저	7	1	국	ヱ	융	자	지능	라비	자브	부담
		수	배품목	분	사 업	량	주요 추진 내역	공정 률	계획	집행	계획	집행	계획	집행	계획	집행	계획	집행
						m²		%										
계																		

주1) 작성요령

- 가. 사업명: "ICT융복합확산", "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"
- 나. 사업구분
- ICT 융복합확산 : 시설원예현대화, 화훼류신수출, 스마트팜장비, 에너지절감장비
-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: 신재생에너지시설
- 다. 세부내역
- 시설원예현대화 :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점적관수, 자동개폐기, 환풍기, 무인방제기 등
- 화훼류신수출 :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, 휴작기 종구시설, 근권냉난방기 등
- 스마트팜장비 : 외부센싱, 내부센싱, 통합제어, 온실관리시스템, 모니터링 등
- 에너지절감장비 : 다겹보온커튼, 자동보온덮개, 순환식수막시설 등
- 신재생에너지시설 : 지열, 폐열, 공기열, 목재펠릿난방기
- 라. "주요추진내역"난은 착공, 공사착수, 발주,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
- 마. "사업비집행"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
- 주2)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(엑셀 등) 활용 작성·제출
- 1. 금후 사업추진일정
 - 0
- 2. 사업추진 상 문제점(부진사유) 및 대책
 - 0
- 3. 기타 참고사항
 - 0
 - 0

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(시설보급) 정산결과 보고

(단위: 천원)

					~														사	앝	1	비									
실	시	닾	댄	농급	주 재			사	업	량			7	계호				집 (행실 정신	!적 <u>ŀ</u>)		ГШ	[(├음 이월	해 [<u>!</u>	불용	-	착	준	불용
시 도 명	시군구명	단 체 명	대 표 자	농 가 명	재 배 작 물	사 업 명	사업구분	세 부 사 업	계 획 (A)	실 적 (B)	대 비 (B/A)	계	국고(C)	융 자	지 방 비	자 부 담	계	국 (D)			자 부 담	대 비 (D/C)	국 고	융 자	지 방 비	국고	융 자	지 방 비	착공일	준고 이일	사 유
							_				%											%									

주1) 작성요령

가. 사업명: ICT융복합확산

나. 사업구분 : 시설원예현대화, 화훼류신수출, 스마트팜장비, 에너지절감장비

다. 세부사업

- 시설원예현대화 :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점적관수, 자동개폐기, 환풍기, 무인방제기 등

- 화훼류신수출 :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, 휴작기 종구시설, 근권냉난방기 등

- 스마트팜장비: 외부센싱, 내부센싱, 통합제어, 온실관리시스템, 모니터링 등

- 에너지절감장비 : 다겹보온커튼, 자동보온덮개, 순환식수막시설 등

라. "주 재배작물": 대표 품목명 1개 기재(예시: 토마토, 오이, 백합 등)

마. "사업량": 세부사업별 설치,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(사업성격에 따라 개소, 대, m², ha 등) 주2)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(엑셀 등) 활용 작성·제출

(단위: 천원)

	I										(211. 22)
	회계			사업	생년			사업비			포기·이월
구분	연도	시도명	시군명	자명	월일	계	국고	융자	지방비	자부담	사유

주1) 작성요령

가. "구분": 포기, 이월 구분 기재

주2)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(엑셀 등) 활용 작성·제출

사업자 선정기준표(ICT융복합 확산, 시설보급)

□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: 1.노후 온실 개보수와 동시 추진 (여/부), 2. 재해 피해 농업안·농업법인 (여/부) 생산·유통조직 참여 경영체 (여/부)

		시설조건	선(40점)	Ş	활용조건(40점)		
시군	사업 신청자	온실 조건 (25점)	ICT 시설 (15점)	시설 활용 (20점)	사업 지속성 (10점)	부대 환경 (10점)	가점	합계 (100점)

가점조건	(줒보	전용	가능
ノーエ に	ハウコ	\neg	/ 10

-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(50%이상 5점, 30% 이상~50% 미만 3점, 10% 이상~30% 미만 2점): () 점
- 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규격 시설(5점): ()점
- 농식품인증 비율(50%이상 5점, 30% 이상~50% 미만 3점, 10% 이상~30% 미만 2점): () 점
-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(5점): ()점
- 지역 푸드플랜 참여(또는 참여 약정)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(5점): ()점
-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사용(5점): ()점
-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(5점): ()점
- □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

지원지	가격 및 요건 충족 여부		지	원제외 대상자 여부	
충족 () / 미충족 ()	대상 () / 미대상 ()

< 평가 참고사항 >

- □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,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, 시·도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(구 농정심의회)에서 공개심의
 - * '사업대상자 선정기준'의 평가항목에 지역별·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·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(구분)을 변경할 수 있으며,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구간 내 항목 추가·변경 가능

□ 시설조건

- 온실조건: 온실의 종류, 규모화, 작목, 재배기간 등 ICT 융복합의 적합성 정도
- ICT 시설: 온실내 자동화 정도, 기 도입된 ICT 융복합 시설의 보유 정도

□ 활용조거

- 시설 활용: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,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
- 사업 지속성: 농업후계인력 확보,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
- 부대환경: 작업장의 상황 정도(전원공급, 무선통신 및 PC설치·운영 가능상황 등)

[별첨 2] 기성고 확인서

발급번호 제	호							
()사업	사업실적	(フ	']성고)	확인/	서	
주 소		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<u> </u>	· · ·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
성 명			생년	실일				
사업내용								
건축물 소재지								
건축물 규모(m²)					구조			
기어계회	합. (A=B+		자부담(B)		보조	금(C)		융자금(D)
사업계획		1000천원	400천원(4	0%)	 300੨ੋਂ	원원(30%)		300천원(30%)
	* 총투자계획	은 공사 도급	계약서 등을 통	해 혹	인			
	공정률 (J=E/A)	합계 (E=F+G+ H+I))	자부담(F)	上	조금(G)	융자금(H)	기타(I) (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)
사업실적	40%	400천원	200천원	_	100천원	0-	천원	100천원
	증빙자료 [및 현장답사내	(단, 기타(I)는 용 등을 종합적 , 영수증, 노무	으로	검토하여	사정		
대출현황	금번 대출	는 신청액(L)	기대	출액((K)	대를	출 총	계(=L+K)
네글 건경		120천원	7		천원			천원
사업대상자 결정	년	월 일	일					
현장 점검자	(직 급)		(성 명)					
위:	와 같이 자부두	+금을 우선 집]행하고 사업추	진 실	적(기성고)	확인을 요	<u>.</u> 2.청힙	남나다.
		년	월 일	ļ				
	시처이	(사업대상자)		(겨	명 또는 님	10])		
 상기 내용에							 사실	ļ과 다르지 않
음을 확인함.	116 166 1		H 0 E 1 U,	10 =	. 0 (1, 0/,	0 0 2 / 1	, ,	- 1 - 1 - 0
ㅁㄹ 덕년급.		1-2	م اه ام	1				
		년	<u>월</u> 일	<u> </u>				
		확인자		(인)			

※ 대출 가능금액 산출(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)

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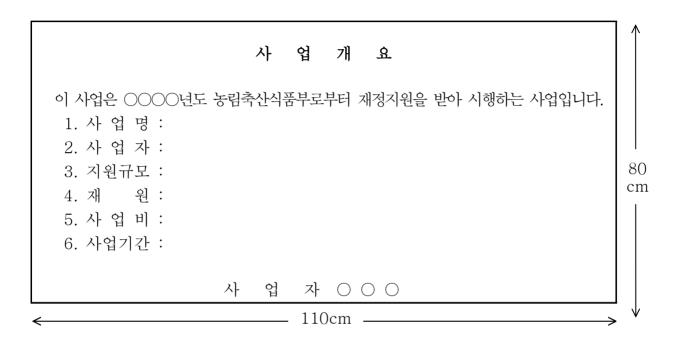
1.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%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
: ①최초 대출시 F는 B*1/2 이상 집행 여부 확인
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(예시 : (A× J) - (F+G+K))
2. 1호 이외의 경우 :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(예시 : (A× J) - (B+G+K))

천원

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

1. 표준안

가. 준공전 안내문



나. 준공후 안내문

이 사업(시설)은 ○○○○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(설치한)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1. 사업명:
2. 사업자:
3. 시설규모:

4. 재원5. 사 업 비 :

6. 사업기간:

○○○년 월 일

21 cm

다. 스티커형 표지

이 농기계(차량, 철부선 등)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(설치)한 것으로 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2. 대 상

ㅇ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

< 예시 >

- 건축물: 미곡종합처리장, 농산물저장창고, 유리온실, 집하장, 농산물가공공장, 농산물생산·유통시설, 축산시설, 직거래 판매시설 등
- 시설물 : 저수지, 양수장, 배수장, 농어촌도로, 임도 등
- 사업장 : 농지종합정비지구, 재경지정리지구,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,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, 간척사업지구, 관광농원, 축산단지, 농공단지 등
- 기 타 : 대형농기계 등

<제외사업>

- 예 :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, 도난·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

3. 표시방법

- ㅇ 준공전 안내문
 -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(규격 110cm×80cm)
- ㅇ 준공후 안내문
 - 동판, 석판, 나무판,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(규격 30cm×21cm)
 -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※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